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 다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Police Diversion Program Active Plan For Juvenile Delinquency Repeat Prevention

박은민, 최진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un-Min Park(empark@dsu.ac.kr), Jin-A Choi(mochoi2020@hanmail.net)

요약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비행 소년·범법 소년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로 판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선도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 소년·범법 소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활성화 및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모교육의 필요성, 멘토의 활성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청소년 | 다이버전 프로그램 | 재범방지 |

Abstract

The juvenile delinquency starts from trivial misconduct and reoccurs with the second offense. It is necessary the active plan to reduce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cessing the case of law breaking juveniles is to focus on the guidance process rather than punishment process in order encourage them to come back to society as normal members. In this process, I propose the specialist activation, the appropriate confrontation for the first criminals, the necessity for parents education, the mentor's activation, the program development to reduce the juvenile delinquency's second offense rate.

■ keyworded : | Juvenile | Diversion Program | Second Offense Prevention |

I. 서론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흉악 범죄로 발전하고, 성인범죄자로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가 청소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국가적 개입은 청소년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릇된 자아관념을 형성케 함으로써 결국 또 다른 범죄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사건의 경우 비행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실질적 선도 없이 형사

접수번호 : #110218-003
접수일자 : 2011년 02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14일
교신저자 : 최진아, e-mail : roseemin@yahoo.co.kr

처벌 만을 적용한다면 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행 소년은 장차 보다 큰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1].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특히 소년범죄는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년범죄자들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여 교육을 통한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행소년을 가급적 조기에 소년의 비행원인 및 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도 조치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소년을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비행소년에게 적절한 개선교육조치를 부과하여 비행예방과 사회통합을 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2].

청소년 상습범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이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란 범행 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원에 의한 사법절차를 받기보다 대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여 소년 사법체계에 노출되는 청소년 수를 감소시켜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막아 결과적으로 사후 비행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3].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소년이 경미한 범죄를 처음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과 그 부모는 8주간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청소년보호관찰부 직원, 경찰관, 법원관계자, 청소년상담사, 교수로부터 8주간 수업을 들은 후 90일내에 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범죄 기록은 영구히 봉인된다. 이것이 초범 대상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이다[4].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크게 늘면서 기존의 사법정책으로는 더 이상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사건 조사 시 우선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행사실에 대해 조사 한 후 재판단계에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한다. 이 과정에서 소년법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첫째, 경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미

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해당)의 경우에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며(전지연, 2004), 둘째, 검찰단계에서는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과 동일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에 권한이 있으며, 마지막 법원단계에서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소년부와 전문분류기관인 소년 분류 심사원을 통해 소년범을 보호사건으로 다루어 형사제재를 최소화하여 범죄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3][4].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범법 청소년의 사법처리과정에서 반복적 조사와 낙인효과 등으로 소년이 자포자기하는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전지연, 2004).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정책과 실제 범법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법 서비스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제까지 소년범에 대한 사법 서비스는 낮은 범위의 시설처우이거나 별다른 선도대책 없이 귀가조치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의 제공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범법 청소년들을 위해 시급하다. 따라서 범법 청소년들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는 현황들을 살펴보고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1 소년비행의 원인

Dahlberg(1998)는 폭력과 비행의 원인으로 어린 시절 공격적 성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대 및 부모 역할 부재와 같은 가족적 특성, 비행친구와 같은 또래의 영향 등 폭력에 접근하기 쉬운 여러 환경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인 비행 성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적 요소, 또래적 요소 및 학교 요소, 지역 사회적 요소 등 비행자 주위의 여러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과 폭력은 청소년 개인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릴 수 없다.

기광도(2005)는 중고등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이 피해소년의 폭력범죄를 조장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5]. 즉 소년폭력은 가정폭력의 연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소년폭력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폭력소년은 성인 폭력범죄와는 달리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놀림/조롱, 협박, 집단따돌림, 폭행, 뺨찌기 등의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이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6]. 비록 매우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소년이라도 폭력성향이 아직 고착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지만[7] 폭력 소년이 성인이 되어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순래(1996)는 소년원 출원자 9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년기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성인범죄자로 발전한 비율이 높고, 최초범행에서 5차 범행까지 폭력범죄를 1회 이상 저지른 적이 있는 소년범 가운데 차후범죄가 폭력범죄인 비율이 51.5%로 전문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8]. 일진형 폭력집단이 조직폭력배의 주요한 충원통로라는 이동진(2003)의 지적은 소년폭력이 조직폭력의 재생산 기반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보여준다[9].

청소년 폭력과 비행에 대해 Weiner(1982)의 관점에서 비행 청소년의 심리적 원인을 살펴보면[10] 첫째, 사회적 비행(Social delinquency)은 반사회적 불법 행동들을 허용하는 하위문화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 일탈 하위문화 집단원들은 대부분 함께 어울려서 비행을 저지른다. 그들은 집단들과의 비행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소속감을 얻기 때문에 비행행동을 포기하기가 어려우며, 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다.

둘째, 성격적 비행(Characteristic delinquency)은 주로 비사회적 성격 성향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능력과 반항심에 대한 결과로써 비행을 저지른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공격적이며, 획득적이고, 감각추구적인 충동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받을 고통에 대해 전혀 염두 하지 않는다.

셋째, 신경증적 비행(neurotic delinquency)은 비행자가 환경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매우 개인적으로 시도되는 비행이다. 비행은 개인의 긴장, 후회, 낙담, 분노와 높은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걱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고 나면 비행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신경증적 비행자들의 생활 패턴은 전형적으로 조화롭고 잘 통제되는 청소년들이 많아 주변사람들은 비행청소년들의 범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놀라게 된다.

넷째, 정신병적 혹은 기질적 비행(psychotic or organic delinquency)은 정신병이나 기질적 뇌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신병적 비행은 환경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자각하고 행동의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정신분열증 청소년을 나타내며, 기질적 비행은 자신의 명백한 목적 없이 몸이 움직이는 정신운동적 발작과 관련되어 있다.

1.2 소년폭력의 현황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흉악 범죄로 발전하고, 성인범죄자로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가 청소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표 1]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2009년에 재범률이

표 1. 연도별 소년범죄 재범 현황

| 구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소년범 | 115,210 | 96,697 | 86,861 | 83,477 | 90,628 | 115,661 | 1123,044 | 118,058 |
| 재범자 | 41,729 | 33,814 | 29,431 | 25,920 | 26,450 | 33,681 | 31,771 | 33,207 |
| 재범률(%) | 36.2 | 35.0 | 33.9 | 31.1 | 29.2 | 29.1 | 25.8 | 32.4 |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0.

32.4%로 2008년 대비 6.6%가 증가하는 등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율은 2002년 이후부터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소년범죄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며, 효율적인 재범방지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소년범에 있어서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선도 교육 및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소년범죄자 중 성인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무려 67%에 달한다고 한다[11].

연령별 분포를 보면 소년범 개정('08.6.22)에 따라 소년의 하한 연령이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14세 미만 소년범이 2009년도에 감소하여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18~19세 소년범 현황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14~15세, 16~17세의 소년범의 현황은 점차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죄의 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다이버전의 필요성

다이버전(diversion)이란 공식적 사법처리절차가 갖는 낙인 및 범죄유발효과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절차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체포, 기소, 판결, 구금과 같은 통상적 범죄자 처리과정에서 벗어나 일단 사회에 먼저 복귀시켜 사회 속에서 개선·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조치를 의

미하는 것이다[12].

즉 다이버전이란 성인범이나 소년범을 정식공판이나 유죄판결 이전에 비행사적인 선도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초기의 법원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서 1967년 법 집행-사법 행정 대통령 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에 의해 권고된 이래 가장 보편화된 개혁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첫째, 다이버전은 소년범에 대한 사건부담수를 많이 줄여 소년사법체계를 가능하게 하고, 둘째, 부적당한 현재의 소년사법 치료체계보다 다이버전이 효과적이며, 셋째, 다이버전은 입법자나 기타 정부지도자들이 현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성공적인 소년프로그램에 재배치할 기회를 주고, 넷째,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비용이 수용시설의 1인당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3].

하지만, 다이버전이 모든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초범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을 통한 재범 방지와 개선·교화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13]. 성인 범죄자보다 소년 범죄자에게 다이버전이 갖는 효과가 큰 이유는 소년범죄자는 아직 범죄의 고착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선도 조치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준호와 이순래(1995) 연구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중에서 성인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와 같이 소년비행·소년범죄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년 비행자들을 가급적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 교육을 실시

표 2.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 구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14세미만 | 1,667 | 1,376 | 1,503 | 1,679 | 1,718 | 2,602 | 5,547 | 2,615 |
| 14~15 | 24,042 | 22,305 | 19,141 | 23,045 | 27,662 | 37,256 | 45,034 | 41,607 |
| 16~17 | 38,426 | 32,524 | 27,247 | 28,292 | 31,408 | 41,473 | 50,766 | 51,345 |
| 18~19 | 51,075 | 40,492 | 38,970 | 30,461 | 29,840 | 34,330 | 21,697 | 22,491 |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0

해야 한다는 점이다[14]. 소년비행·소년범죄는 소년기의 민감한 감수성을 반영하여 즉흥적·충동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 범죄자에게 초기에는 정식 처벌 절차보다는 비행사절차를 통한 개선 방법이 비행방지에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15]. 다음과 같은 한 예를 볼 수 있다.

“김○○외 2명(만 15세, 남, 중3) 피의자들은 중학교 동창들로 2009.10.2.15:00경 서울 관악구 ○○아파트 단지 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의자들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은 특수절도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식적인 형사절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에게 낙인의 폐해가 발생 되는 전형적인 사건유형 중 하나이다. 청소년비행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범할 수 있다. 이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년비행·소년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민감한 소년기를 무사히 넘기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2].

1970년대 초 매사추세츠 주의 청소년보호국장인 Jerome Miller는 청소년 비행·범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의 모든 소년교도소, 소년원을 폐지하고 보호시설, 대체가정, 정신요양소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이런 시도가 적합한 처우가 아님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들을 제외시켰지만, 미국 내 수많은 수용시설들이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프로그램 실행기관으로 대체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조준현, 2003). 그 이후 청소년 범죄자들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가지 않고 치료를 겸한 교육시설로 보내졌으며, 약물치료교육에 참여하거나 위탁보호가정이나 보호시설, 혹은 상담소로 보내지게 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다이버전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경미한 소년범의 경우는 재범방지와 개선·교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년범죄는 성인범과 달리 공식사법절차를 통한 해결은 성장기의 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소년범들이 구체적인 선도 방안 없이 사법처리 과정을 고스란히 경험함으로써 전과자란 낙인이 찍혀 사회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III.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 가족협의제도, 사랑의 교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전문가 참여제

이 제도는 소년이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시점부터 즉시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3년도에 2개 경찰서(송파경찰서,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처음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2009년에는 60개로 확대 운영 중이나 전국 244개서의 24.6%만 운영되고 있다. 조사를 담당할

표 3.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 구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
| 운영관서(개소) | 2 | 5 | 45 | 52 | 52 | 52 | 60 |
| 참여소년범(명) | 55 | 331 | 1,320 | 3,958 | 5,675 | 6,266 | 5,507 |
| 전체소년범(명) | 96,697 | 86,861 | 83,477 | 90,628 | 115,661 | 123,044 | 118,058 |
| 참여비율(%) | 0.05 | 0.38 | 1.6 | 4.4 | 4.9 | 5.1 | 4.7 |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0

전문 인력으로 범죄 심리사들이 참가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상담처우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청소년 상담시설이 대행하였다[16]. 2009년 지도교수 86명, 범죄심리사 278명의 전문가 풀을 갖추고 있다[17]. 하지만 2009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체 소년범중 5%내외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문가 참여조사를 받았다.

전문가 참여제는 과학적인 다이버전 전략에 있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나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한 다이버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해 다이버전이 될 가능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 참여제는 단순훈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소년범 재비행 방지를 위해 소년범 수사초기에 범죄 심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소년범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과학적인 수사시스템을 의미하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상담처우는 청소년 상담시설에서 대행한다[18].

경찰청의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사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월 고등학교 1학년인 서모군(17세)은 성남 수원에 있는 찜질방에 가는 길에 20대 가량의 남자 2명으로부터 22만원을 빼앗기자 억울함과 복수심으로 그날 밤 11시경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을 위협해 6만 7천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서군의 경우 비교적 부유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비행전력도 없으며, 호기심이 많고 다소 엉뚱한 면이 있으나 학교생활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면담에 있어서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면 초범이고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되고 있는 서군은 비행동기 또한 충동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비행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피해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예측되어 부모의 가정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선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훈방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례의 경우 경찰 다이버전이 도입되면 초범이고 비행예측결과와 재비행위험이 낮은 경우 전문가의 의견대로 형사입건 없이 훈방되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19].

3.2 가족협의제도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호주, 뉴질랜드, 북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협의 제도이다. 가족협의제도는 주로 소년 사법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사실과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자는 것이다[20].

가족협의 제도는 범죄로 인한 갈등 해결은 반드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 특히 가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만나 조정자의 지시에 따라 처벌보다는 화해를 하자는 것이다. 소년 비행자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 예컨대 경찰, 조정자, 피해자·가해자 부모들이 모여 비행의 원인 등을 토론한다. 토론이 끝나면 비행소년이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논의한다. 보통 가해자의 사과, 금전적 보상, 사회봉사, 사랑의 교실 등에서의 참여 등이 해당된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소년범죄의 경우 보통 3가지 단계로 운영된다. 경미한 사건은 경찰의 경고로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협의에 회부하고, 앞의 두 단계 이외의 경우는 법원에 넘긴다.

가족회합모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 가족성원을 포함하여 조정방법을 이용하는 접근법으로 가족회합 또는 회합조정으로 불릴 수 있다. 회합모델은 '수치심 승인'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유대관계의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성인 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그리고 친밀한 유대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학교나 가정,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보다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2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5개 경찰서에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합 조정팀의 주도하에 경찰단계의

가족회합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1차 시범이 마감되는 시한까지 의뢰건수가 전혀 없었으며, 1차 시범 운영 시 발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7년 10월경 13개 경찰서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차 시범운영에 들어간 결과 총 10건을 의뢰받아 6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22].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합조정팀은 2007년 8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가족회합제도 실시결과는 [표 5]와 같다.

3.3 사랑의 교실

현재 경찰청은 비행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의 교실’이라는 일종의

‘개입형 다이버전’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 심리사의 재비행 위험성 분석 결과 재비행 저위험군은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에 위탁하여 선도 교육을 실시한다[19]. 개입형 다이버전으로 비행소년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또다시 비행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속한 재사회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찰이 실시하는 다이버전이다[23]. 사랑의 교실 교육을 통한 소년 비행자는 일반 소년 비행자들 보다 재범률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랑의 교실 운영 초기에는 경찰청 세부지침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즉 매월 2회 토요일 오후에 영화 및 슬라이드 시

표 4. 회합모델의 장점

| 목표대상 | 장점 |
|---------------|---|
| 가해소년 |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과 피해결과를 직접 들음으로써 잘못을 깨닫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 등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음 -공식적인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처벌의 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 가해소년부모 | -자녀와의 유대를 새롭게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짐 -자녀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건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 -가해자를 만나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보복이나 피해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자신이 겪은 고통과 피해영향을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피해감정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짐 -장기간고비용의 민사소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피해자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을 직접 이야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지역사회 (학교공동체) | -지역사회에 의한 효율적인 조기 개입으로 범죄발생 감소 -형사사법체계에 과도한 의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감소 -국가적 개입 없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문제해결력 증가 |

표 5. 가족회합제도 실시 결과

| 연번 | 경찰서 | 범죄사실 | 결과 |
|----|------|---|---|
| 1 | 성동서 | 피의자 2명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폭행 | 가족회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피해자간 사과 및 화해, 의견서 등에 반영 송치 |
| 2 | 동작서 | 가해자 3명은 피해자 8명에게 3회에 걸쳐 현금 약 10여 만원과 의류 갈취 및 폭행 | |
| 3 | 영등포서 |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토바이를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빼앗아 면허 없이 운전 | |
| 4 | 방배서 | 가해자 5명은 수 심회에 걸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 | |
| 5 | 서부서 | 가해자 2명은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금품 갈취 | |
| 6 | 은평서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욕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가슴, 배, 옆구리 등을 수습 회 때려 상해 | |

*경찰청 자체자료, 2007.

청(1시간), 심성개발훈련(1시간), 강연 혹은 정서순화교육(1시간), 평가 설문지 및 소감문 작성(1시간) 등 전체 4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에게는 참석확인증을 교부하고 해당 경찰서에 송부하여 종료되었다[23].

2001년 청소년 사랑의 교실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운영대상을 구분 없이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비행청소년·우범소년·일반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비행청소년(범죄·축범소년) 대상 사랑의 교실, 우범소년 대상 상담교실, 일반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실로 세분화하였다. [표 6]은 진주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 교육내용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

[표 7]은 2010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전국적으로 수집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실시된 사랑의 교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횟수가 1회에서 4회 사이이며

실시시간도 최소 1시간 30분에서 11시간까지로 실시횟수와 실시시간이 길지 않다. 강제성이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들로 인해 실시시간과 실시횟수가 적은 한계점이 있지만, 프로그램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할 것 같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는 측면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IV.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해 상담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율이 상담을 받지 않은 소년들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전문가

표 6. 사랑의 교실 진행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세부내용 및 멘트 | 준비물 |
|----------|-----|--------------------|--|-----------------|
| 마음열기 | 20분 | 인사, 체조 | -내부진행자:출입구에서 밝게 환영인사 | 명찰, 명단 |
| | 40분 | 만남의인사 | -과정설명/약속정하기 | 풍선, 고무줄, 머리핀 |
| | | 레크레이션 | -까치, 까마귀, 명명명 게임/활공 | |
| | | 포스터게임 | -조 구성, 조별게임,조장선출 -다리사이 통과하기, 노컷기, 김발말이, 풍선터뜨리기 | |
| 이완하기 | 15분 | 노래부르기 | -가벼운 활공 후 노래부르기 | 노래가사 |
| 자기보기 | 20분 | 나바라보기 | -무시당할 때, 당당한 모습 | 비커, 돌, |
| 휴식 | 15분 | | -조별로 함께 먹기 | 간식 |
| 자신감 키우기 | 20분 | 원리설명 가슴 풀어내기 | -가슴풀어내는 원리 설명 -"아"소리내기:멘트 -에너지쓰기: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자신감 키우는 내용으로 소리치도록 유도) | |
| 연단 | 20분 | 자기극복 | -하늘 받치기 자세(조별로 서서) | 두꺼운종이 |
| 부모님 생각하기 | 30분 | 부모만나기, 편지쓰기, | -부모님께 편지쓰기 -전체 나눔(편지 읽기) | 예쁜편지, 볼펜,책받침 |
| 칭찬하기 | 15분 | 자기긍정 | -인생영양제/밝음과 어둠(가장 듣고 싶은 말) | |
| 비전정립 | 25분 | 자기 약속 | -조별로 모여서 각자 비전카드 작성하기/읽어주기 | 종이, 볼펜 |
| 마무리 | 20분 | 소감문작성 수료증수여 | -소감문 작성/홍익벤티 달아주기/노래부르기 -수료증 수여 | 설문지용지 |

표 7. 2010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지역 | 프로그램 내용 | 실시횟수 | 실시시간 |
|-------|--|-------------------------|---------------------|
| 서울시 | ·분노조절 ·동작을 통한 마음표현 | ·연극치료 ·미술로 마음 치유하기 | 1회~4회기 4시간~8시간 |
| 경기도 | ·자신의 문제행동 이해 ·폭력법은 분노조절, 정서조절, 주장훈련 ·절도범은 문제해결방식, 인내심 교양 | ·진로탐색, 미래설계 | 1회~4회 2시간~8시간 |
| 인천시 | ·자신의 문제행동 이해 ·진로탐색, 긍정적인 미래설계 | | 1회~4회 2시간~8시간 |
| 광주광역시 | ·문제행동 이해 ·진로탐색 | ·긍정적인 미래설계 | 1회~ 1시간30분~8시간 |
| 대구광역시 | ·타인과의 관계 형성하기 ·역할놀이 | ·부모님께 편지쓰기 ·소감나누기 | 2회 11시간 |
| 울산광역시 | ·의사소통, 행동변화 | ·체험을 통한 성취 욕구 | 2회~5회 8시간~12시간 |
| 충청북도 | ·인성, 체력, 영양물, 법교육, 상담 | | 1회 8시간 |
| 충청남도 | ·멋진 나 만들기 ·나 표현하기 | ·분노조절하기 ·나의 장점, 인생설계 | 1회 6시간 |
| 전라북도 | ·분노조절 ·친구관계 향상 프로그램 | ·시청각 교육 | 2회기~5회기 2시간~10시간 |
| 전라남도 | ·심리검사 ·분노조절 | ·인지행동, ·진로탐색 | 3회 6시간 |
| 경상북도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부모님께 편지쓰기 | ·역할놀이 | 2회 11시간 |
| 경상남도 | ·심리검사 | ·분노조절 ·장점찾기 | 5회 10시간 |
| 강원도 | ·교육(8시간) | ·상담(1시간) | 5회 9시간 |
| 제주도 | ·경찰과 축구경기 ·동반자 프로그램(사후관리) | ·사회심리극 | 1회 8시간 |

* 2010년 경찰청 정보공개 요청 자료[24]

상담을 받은 소년들에 대한 추후관리가 잘 마련되지 않아 재범 방지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첫째, 전문가 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년들에 대한 추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전문가 참여제를 통해 재범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참여제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소년범의 5%내외로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소년범이 전문가의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회합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담당 경찰관의 이해부족과 당사자들의 불참, 둘째, 당사자들의 경찰서 출두에 대한 거부감과 그로 인한 예비조정 진행의 어려움, 셋째, 소년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범 경찰관서에 가족회합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서 소년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이다 [22]. 따라서 가족회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훈련이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조정관들을 양성해서 가족회합 프로그램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의 경우 일반 소년범 재범률은 35%임에 반하여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은 3.9%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의 교실의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25]. 그러나 사랑의 교실에 참가하는 비율에 비해 단순 훈방 처리되는 소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무런 조치 없이 소년들을 다시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김재봉 외(2005)의 연구에서 2002년 훈방을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된 소년은 104,554명인 반면에 사랑의 교실 수강생은 2,924명에 불과하였다.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 비행 및 범법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우범소년·일반청소년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또한 각 범법 청소년들의 비행 성격에 따라 즉 사회적 비행, 성격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정신병적 혹은 기질적 비행으로 세분화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져야 함에도 이러한 분류 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모든 비행청소년에게 실시되고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은 탐색단계, 문제 인식단계, 문제 해결단계, 종결단계 등 4단계로 나뉘어 각 대상에게 적정 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경제적 지원 부족으로 적절한 시간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행 및 범법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탐색하고 문제인식을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이나 10시간 같은 짧은 시간이 아닌 3박 4일이나 20~30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 참여 없이 범법 청소년에게만 변화를 요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방임과 양육 부재 때문에 이탈하여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심과 참여 및 부모의 변화 없이 범법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당사자의 변화만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범법 청소년들이 사랑의 교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 노력한다 해도 가정에 복귀되었을 때 변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청소년들은 또 다시 상처받고 사회로 내몰리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제기된다.

V.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5.1 전문가의 활성화

전문가 참여제는 전문가가 참여해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단순훈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소년범 재비행 방지를 위해 소년범 수사초기에 범죄 심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소년범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과학적인 수사시스템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법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와 조정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참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 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소년범의 특성과 심리, 환경 등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풀 구축은 해당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 전문가의 진단을 토대로 경찰에서 소년범을 훈방하거나 불구속 등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에 청소년 상담사가 개입하여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가참여제의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면담이나 충고 등 단조로운 접촉수단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가의 처우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김준호와 이순래(1995) 연구는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범죄적 성향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소년이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어떠한 상황인식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11]. 경찰단계에서 소년의 인성과 환경을 고려한 분석으로 적절한 선도를 하는 것은 장래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와 같이 소년범에게 진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길은 소년이 처한 환경과 그의 성격과 행동에 대하여 부모와 피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이해이다. 비행·범죄소년이 사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소외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재범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비행예측을 하여 고위험군 소년과 저위험군 소년을 분류하여 각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2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소년법원에서 다루어진 아동범죄(7-12세)가 33%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들이 “보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고질적 범죄자”로 발전할 개연성이 나이 많은 청소년들에 비해 3배가 높다는 분석결과(Snyder, 200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은경·이호중(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범 후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경우가 48.9%나 되고 있으며, 1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72.9%에 달했다[26]. 최초 처분과 재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석방된 소년의 재범횟수는 3.92인데 비해, 비수용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67,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50으로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라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21]. 이러한 결과는 최초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재범억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다이버전 운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들의 규모나 주안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치료, 상담,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소년심판을 건설적으로 회피하도록 하여 사법처리과정에서 반복적 조사와 낙인효과 등으로 비행청소년이 자포 자기하는 역효과를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비행청소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범억제 대책이 될 수 있다. 초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기개입은 재범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범자에 초점을 둔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과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가해 학생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도 부모들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가해 학생들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자녀의 사회복귀에 제일 큰 책임과 역할을 하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는 또 다시 가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계적 요소를 다루기 위하여,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상담 프로그램(청소년보호위원회, 2003)과 탈비행화 촉진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상담개입전략(오익수, 1998)을 제시한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27][28].

가족 중심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좋은 예로는 The Growing FAST(Family and Adolescents Surviving and Thriving) Diversion Program(Stephen, Debra, Charles, & Sarah, 2000)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 변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을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상습범죄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과 가족요인간의 연결고리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비행 청소년의 치료프로그램에 가족을 포함시키는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들은 함께 자신들의 가족사, 지역사회요인, 이웃관계 특징, 스트레스 요인, 특수한 청소년 행동, 가족환경의 6요인과 관련된 위험/보호요소에 대해 표를 작성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비난, 분노,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책임의식을 공유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 중심적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과 더불어 위험요소, 보호요소를 고려하여 실시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혀주고 있다[14].

비행청소년이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해도 부모들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비행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그리고 자녀 사회화의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가 또 다시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적 요소를 다루기 위하여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을 조력하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녀 양육 프로그램 등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4 지역사회 참여와 멘토의 활성화

미국 경찰서에서 실시된 성공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뉴욕에서 실시되었던 Teens on Patrol Program(TOP)은 지역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100명 이상의 비행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수영장, 공원, 놀이동산 등에서 순찰을 시키고, 일반 청소년들이 의심 가는 행동이나 비행행동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경찰에게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뉴욕의 청소년 비행 발생률은 줄어들었다(Caeti, 1993).

네바다의 Reno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구성된 Community Action Team(CAT)이 창설되었는데, 이 팀에 의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그 중에는 경찰관들이 비행청소년들을 데리고 주기적으로 하이킹, 도보여행, 혹은 캠핑을 가는 프로그램인 Police Athletic League(PAL) 프로그램도 있다. 국내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고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비행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와 같이 멘토링은 강력한 재범억제 효과가 있으며 특히 범죄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가족 및 교우관계, 자아개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주위 지역사회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계체제를 통해서 건전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또한 각 지역사회 연계체제의 멘토 활용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멘토링의 대상자 선정 시 비행청소년의 범죄력보다

는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청소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멘토링 선정시 심리전문가의 분석결과에 따라 조치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고위험 상태에 있거나, 가정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행과 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사이클에 있다면 그 흐름을 끊어주는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멘토링 대상이 되지 않거나 멘토링이 곤란한 경우는 지정된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신상과 비행축발요인 등을 심리전문가가 사전에 조사하여 적절한 멘토를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을 멘토링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이 제 비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멘토의 자발성과 책임성이 멘토링 관계의 성공과 효과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멘토는 연령과 전문지식에 앞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멘토는 멘티의 정서적인 지지자 및 역할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멘토는 비행청소년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비행청소년의 문제 원인에 따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멘토가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불화와 문제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부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멘토, 애정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많이 느낀 비행 청소년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멘토 등 다양한 멘토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멘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5.5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다이버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이버전 관련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비행청소년들에게 시급한 부분이다. '가해자의 피해 배상 추적 및 감시프로그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진실성 검증 프로그램’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확증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진실성 검증 프로그램’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확증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약물 치료 프로그램’, ‘아동센터 운영’과 같이 가해자의 회복과 갱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동지원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s)’를 두어 경찰, 의사, 사회복지사, 검찰 등 관계전문가가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30].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심리적 원인을 파악한 후, 개인적 요인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비행 청소년에게는 비행집단 이외에 다른 대안적인 집단에서 재미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정체감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으므로[31] 이러한 방안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격적 비행 청소년은 대인관계 능력에 결함이 있으므로 좋은 관계를 경험하도록 하도록 장기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경증적 비행 청소년들은 적절히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 좌절감, 분노 등의 부적절한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갈등과 불만 요소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능력과 방법을 함양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정신병적 혹은 기질적 비행 청소년들은 의학적 처치와 더불어 자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적절한 사회적 과업(학습, 대인관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적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행 청소년 집단을 동질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여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세분화하여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비행청소년에게 학습, 사회적응 및 탈비행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비행 청소년의 성장환경, 범행동기, 장래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성화

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비행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VI. 결론

우리는 비행 소년·범법 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사회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 즉 비행 소년·범법 소년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고자 할 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비행 소년·범법 소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문제 해결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법만의 잣대로 이들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범죄 증가와 재범을 증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비행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법집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비행 소년·범법 소년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제재절차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선도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일 것이다. 비행 소년·범법 소년의 재범률을 줄이지 못하는 문제해결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되도록 하는 방안과 사회에 재통합되고 재사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행 소년·범법 소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라고 사료된다.

다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비행 소년·범법 소년들이 사회에 복귀되고 재통합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의 활성화이다. 전문가가 참여해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심층 분석을 통해 소년범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다. 경찰은 전문가 참여제를 통해 소년범에 대한 조기 다이버전 전략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재범의 위험성

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 방안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의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조기에 범행청소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범억제 대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전가하여 비행소년·범법소년만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일정 수준의 책임감을 갖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부모는 비행소년·범법소년의 사회복귀에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해주시지 못한다면 비행자녀는 또 다시 비행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역사회 참여와 멘토의 활성화이다. 멘토는 비행소년·범법소년의 문제행동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멘토를 발굴하여 비행소년·범법소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다이버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후속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비행소년·범법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장기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개인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며 가족과의 문제에 의한 것이라면 가족 상담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형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비행소년·폭력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점에서 최적의 통합을 이루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상식, “경찰수사단계에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교정복지연구, 제6권, 제2호, pp.1-20, 2006.
- [2]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pp.33-39, 2005.
- [3] 이명우, 신호정, 김태선, 송은미, 김소라, *경찰 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4] 전지연, “경찰다이버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pp.187-207, 2004.
- [5] 기광도,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범죄와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29-231, 2005.
- [6] 박순진, “청소년 폭력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41-269, 2005.
- [7] 이동원,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pp.358-359, 2003.
- [8] 이순래,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8호, pp.53-54, 1996.
- [9] 이동진,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10] K. B. Weiner,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 [11] 김준호, 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12] 김용우, *형사정책*, 박영사, 2006.
- [13] 전대양, *사회내치우의 과제와 전망*, 관동대 사회과학논총, 제3호, 1998.
- [14] 이순래,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8호, pp.39-63, 1996.
- [15] 법무원연수서, *범죄백서*, 2003.
- [16]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소년다이버전.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분석집*, 경찰청, 2005.
- [17] 김항근,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

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논집, 제14호, 제2권, pp.29-51, 2009.

[18] 유인범, *소년범죄수사 전문가 참여제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9] 한국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5.

[20] M. Umbreit and H. Zehr, *Restorative Family Group Conferences: Differing Model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Federal Probation. Vol.24, No.9, pp.60-75, 1996.

[21] 김은경, 이호중,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2] 박수선,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시범사례 운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연구소 및 회복적 사법 센터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10.

[23] 한국경찰청, *사랑의 교실 설치·운영 세부지침*. 경찰청, 1994

[24] http://www.police.go.kr/infodata/if_open_guide.jsp.

[25] 김재봉, 이영돈,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1호, p.326, 2005.

[26] 김은경, 이동원,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7]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교육 프로그램모형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28] 오익수, *비행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IV*. 청소년 대화의광장, 2003.

[29] 한동주, *멘토링을 활용한 비행예방집단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31] 김성이, 강지원, 구분용, 황순길, *청소년 비행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1996.

저 자 소 개

박 은 민(Eun-Min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비행,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재범방지

최 진 아(Jin-A Choi)

정회원



- 1991년 2월 : 전남대학교 가정학과(가정학석사)
- 1996년 8월 : 전남대학교 가정학과(가정학박사)
- 2010년 ~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비행,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